중동 전쟁 관련 수출기업 긴급 지원사업 메뉴판

2026.4.1.(수)

□ 긴급 바우처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공고일정	문의처
긴급 수출바우처 (산업부/KOTRA)	중동 수출실적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 반송 및 우회비용, 전쟁위험할증료 및 긴급분쟁할증료, 화물 중동현지 발생 지체료 등	(2차) 3.31 접수종료 (3차) 추경 편성 완료 후 공고 예정	02-6004-8400 exportvoucher .com
긴급 물류바우처 (중기부/중진공)	❶ '26.2월 이후 중동국가 물류발송 또는 '26년 이후 중동지역 수출계약 체결, ❷ '26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 중 최근 1년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국제운송료, 해외내륙 운송료,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3.17. 공고 3.20. 접수 (예산 소진시 종료)	055-752-8580 exportvoucher .com

□ 물류 지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공고일정	문의처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무역협회)	수출 중소화주	해상운임 할인, 선복 확보 지원 (수요조사 응답 필요)	수시	1566-5114 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02-6000-5935 kscn@kita.net
중동 대체항 노선 수요발굴(무역협회)	중동향 수출화주	대체항 노선 서비스 개설	수시	
중동지역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경기도)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보유 및 1월~3월간 수출신고 실적 보유 중소기업	500만원 한도 내 국제 해상/항공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 90%까지 지원	3.23. ~3.31. (16:00)	경기FTA센터 031-8064-1383 egbiz.or.kr

□ 마케팅 지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공고일정	문의처
대체시장 발굴 위한 시장조사 이용료 할인(KOTRA)	'25년도 중동 7개국 대상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UAE,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이란, 바레인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대체시장 발굴, 출장지원 등 제공하는 '수출24 글로벌대행' 유료사업 20% 할인	3.12.~	02-3460-7221 02-3460-7159

□ 금융 지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공고일정	문의처
무역금융 지원 (무역보험공사)	전년도 중동 20개국 수출실적 보유 중동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지원(한도2배 우대, 무감액 연장), 거래선 다변화(해외신용조사서비스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3.16.~ (우대기간 ~'27.2.28)	1588-3884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기부/중진공)	사회재난 및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최대 10억원, 5년 이내 운전자금 지원	(공고) '25.12.24. (접수) 매월 첫주	1811-3655 www.kosmes.or.kr
긴급경영안정보증 (중기부/기보)	재난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보증비율 85→95% 상향, 보증료율 0.3%p 감면	수시	051-606-7463
중소중견 지원자금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산업은행)	중소중견기업	금리 최대 0.4~0.7%p 인하	수시	1588-1500
공급망 결제성 여신 지원 유동성 지원 대출 (기업은행)	중소기업	금리 최대 1.0~1.3%p 인하	수시	1588-2588
위기대응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보증료율 0.5%p 인하	수시	1588-6565
위기대응프로그램 (수출입은행)	수출 기업	금리 최대 2.2%p 인하	수시	02-6252-3518
[신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동 상황 피해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산은·기은·신보)	중동 상황 관련 피해기업**	원금 내입없이 만기연장	상시접수	고객센터 산은 1588-1500 기은 1588-2588 신보 1588-6565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산은·기은· 신보·기보)		중소·중견 지원자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공급망 결제성여신 지원 프로그램, 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대출,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 글로벌 통상환경변화 대응대출, 위기대응특례보증 금리 또는 보증요율 감면	상시접수	고객센터 산은 1588-1500 기은 1588-2588 신보 1588-6565 기보 1544-1120
긴급경영안정자금 (충청북도)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이상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일반화물운송업	<신규대환대출> 한도 5억원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 우대 <만기연장> 1년, 운전자금 3개(경영안정, 고용, 영세 중 택1) <제도개선> 시군자금 중복지원 제한 한시적 해제	3.20.~ (예산 500억 소진시 종료)	충북도 경제기업과 043-220-3223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29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공고일정	문의처
긴급경영안정자금 (전라남도)	최근 6개월 내 중동지역 수입실적 보유 또는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은행자금 대출시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1.1%p~2.5%p) 지원	3.17~ 매분기초 1일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www.jnfund.kr 061-288-3832~4
긴급경영안정자금 (전북도)	안내예정	기업당 최대 2억원 융자, 2% 이자차액보전	안내예정 (3월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www.jbok.kr 063-711-2021~2/2053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경상남도)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며 '26.3.1.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기업	대출금리 이차보전(2.0%p)	3.23.~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경남투자경제진흥원 gibamoney.or.kr 055-230-2901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상북도)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두었으며 중동 정세로 인해 현지통관지연, 주문취소 등 직/간접적 경영애로 발생한 기업('25년 1월 이후 수출실적 보유 필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있음, 총 5억원 이내 융자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기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	진행중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gfund.kr 054-470-8570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인천광역시)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한도 5억 이내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1년간 이차보전 2.0% 균등 지원	3.26~	인천테크노파크 기업경영지원센터 032-260-0661~4

□ 행정 지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공고일정	문의처
납기연장·분할납부·담보제공생략 (관세청)	중동전쟁 직접피해 및 간접피해 기업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하여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최대 6회)허용으로 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즉시시행	(공통) customs.go.kr (지역별) 서울세관 02-510-1375 seoulfta@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인천세관 032-452-3172 incheonsupport@korea.kr
수출환급 지원 (관세청)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무서류(Paperless) 심사 및 수출이행기간 연장 승인을 통한 신속 환급 및 수출지원	즉시시행	
운임특례 지원 (관세청)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다른 항로로 우회하거나,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4월중 시행 (3월분 소급적용)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공고일정	문의처
통관 지원 (관세청)		긴급조달 물품1) 신속통관 지원2)으로 국내기업의 피해 예방 해당 지역 수출화물에 대한 적재기한 연장 적극 승인	즉시 시행	대구세관 053-230-5183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2 danielak@korea.kr 평택세관 031-8054-7169 ptfra@korea.kr
정보데이터 지원 (관세청)		원유 등 7개 에너지 품목의 수입가격 모니터링 정보 제공 경제안보 품목 수입량·수입단가 분석을 통한 공급망 위기 점검 중동을 포함한 국가별·품목별 수출입 통계 제공범위 확대	즉시 시행	
중동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행안부/각 지자체)	중동상황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	3.10.~	각 시/군 세정과, 재무과 등 담당부서

* 직접피해 : 중동 20국(UAE, 바레인,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예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아

** 간접피해 : 중동전쟁의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기업 경영에 피해를 입은 업체

참고 **중동 전쟁 관련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무역협회)**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

①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 **(개요)** 국적선사(HMM 등) 협력, 中企 대상 해상운임 할인 및 선복 확보 지원
- '25년까지 동 사업 진행했으나, 연초 운임 안정세에 따라 잠정 사업 중단
-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해상운임 변동성 확대 및 운임 상승 시 사업 재개 검토

○ **(현황)** 노선별 수요 조사 수시 시행
- 수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운협회·국적선사 등과 재개 여부 결정

② 중동 대체항 노선 수요 발굴

○ **(배경)** 중동 대체항 노선의 화주 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선사의 중동 대체 노선 개설 및 선복 배정 등 의사결정 지연

○ **(현황)** 코르파칸·소하르 등 주요 대체항 노선 수요 조사 수시 시행
-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해수부·선사 대상 노선 신설 의뢰 예정

□ **(산은)** 중소·중견기업 중심 지원 **8.0조원**

① 중소·중견 지원자금(6.0조원)

○ **(업체별 한도)**
- (시설자금) 중소기업 3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
- (운영자금)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300억원

○ **(금리우대)** 최대 △0.4%p

②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2.0조원)

○ **(업체별 한도)** 시설 1,000억원, 운영 500억원

○ **(자금용도)** 설비투자, R&D투자, 운영자금

○ **(금리우대)** 최대 △0.7%p

□ **(기은)** 수출입·중소기업 지원 **2.3조원**

① 공급망 결제성여신 지원 프로그램 (1.0조원)

○ **(개요)** 유가상승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 **(지원대상)** 제조업, 유망 서비스 산업, 수출입 기업, ESG 우수기업 등

○ **(자금용도)** 결제성 자금
※ 할인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자채권담보대출, 구매자금

○ **(대출한도)** 은행 내규에 따름

○ **(우대내용)** 금리감면(최대 1.3%p) 우대 등

② 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대출 (0.5조원)

○ **(개요)** 유가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지원대상)** 생산자물가지수 상위 업종 영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3% 이상 상승 중소기업

○ **(자금용도)** 운전자금

○ **(대출한도)** 은행 내규에 따름

○ **(우대내용)** 금리감면(최대 1.3%p), 대출한도 우대 등

③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 (0.3조원)

- ㅇ **(개요)** 중동 전쟁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ㅇ **(지원대상)** 중동 전쟁에 따른 환율 급변동 등으로 자금곤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
- ㅇ **(자금용도)** 운전자금
- ㅇ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5억원
- ㅇ **(우대내용)** 금리감면(최대 1.0%p), 대출한도 우대 등

④ 글로벌 통상환경변화 대응 금융지원 (0.5조원)

- ㅇ **(개요)** 미국발 관세위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극복 지원
- ㅇ **(지원대상)** 관세 관련 애로사항 보유기업, 수출 확대 및 수출처 다변화 자금, 원자재 확보 자금
- ㅇ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ㅇ **(우대내용)** 금리감면(최대 1.3%p), 보증료감면(최대 0.7%p) 등

□ (신보)「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3.0조원**

① 위기대응 특례보증긴급위기 프로그램(3.0조원)

- ㅇ **(지원규모) 3.0조원** (잔여 여력 1.3조원)
- ㅇ **(지원요건)** 美수출입실적 보유, 수출입 실적 감소, 관세 피해업종 영위, 매출 또는 고용 감소 기업
- ㅇ **(보증우대)** 보증료 0.5%p 차감(상한 1.0%), 보증비율 90%

□ (공통)「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① 중동 전쟁 관련 피해기업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ㅇ (**개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대출 만기연장 지원
- ㅇ (**지원대상**)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 ㅇ (**우대내용**)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내입없이 1년內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 (관세청)

① 납기연장·분할 납부·담보제공 생략 (즉시 시행)

- (대 상) 중동상황 관련 직·간접피해를 입었다고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중동 지역 수입기업 중,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구분	제외요건
업체	①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 ②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납부기한 경과 30일내 납부 시 제외) ③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
물품	④ 수입신고 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사전세액심사 대상) 제5호(가격변동이 큰) 물품

- (내 용)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하여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부 기한 연장·분할납부 지원*

* 업체 상황(파산선고, 법인해산 등)으로 관세 채권 확보가 우려되는 경우 담보 제공 요청 가능

원칙	중동상황 관련 특별지원
납세신고 수리일·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관세 납부	최대 1년까지 납기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분납 허용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원칙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 (절 차) 납기연장 등 신청(별지서식 이용) 및 사후관리(취소 등)는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처리

② 수출환급 지원 (즉시 시행)

- (대 상) 중동상황 관련 직·간접피해를 입었다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중동 지역 수출기업으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내 용)

[**신속 지급**] 환급금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 및 지급하고 사후에 심사(先지급 後심사)

[**무서류 심사**] 환급 사전심사 또는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환급 신청 건을 P/L(Paperless)로 전환

[**제외**] 과다환급 우려가 높은 조정고시 대상 물품

[**수출이행기간 등 연장**] 중동상황으로 인해 환특법상 이행기간 내에 수출·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의 '불가피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구분	수출이행기간 연장	국내거래기간 연장
대상품목	플랜트 수출 물품* *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제한 없음
이행기간	2년 → 3년	1년 → 1년 6월
승인절차	신청서, 입증자료 제출 → 세관장 심사 → 수출이행기간(국내거래기간) 연장 승인	

③ 운임특례 지원 (4월 중 시행, 단 3월 수입분 소급 적용)

- (대 상) 호르무즈 해협 통행 불가로 다른 항로를 이용하거나 대체 항공편을 이용함에 따라 운임이 증가한 기업
- (내 용) 통상적인 선박 운임을 적용하여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 및 시달

※ 중동상황 발발 이후 영향을 받은 수입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 예정

④ 통관 지원 (즉시 시행)

- 긴급조달물품 신속통관 지원
- (대 상) 중동 상황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긴급조달물품* 및 해당 지역으로 수출 후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화물

  * 국내 수급난 발생물품 또는 피해업체가 반입하는 긴급조달물품
- (내 용) 긴급조달물품, 유턴화물 등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 수입 신고 서류제출 및 검사 최소화, 대상화물 최우선 처리
- 원유·천연가스 등 국제정세로 인해 물가 급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국내반입 시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로 신속통관 지원
- (중동) 원유, 천연가스 / (유럽) 반도체 제조설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수출 후 국내 유턴화물에 대해 국내 반입시 간이한 심사*로 신속 통관하고, 재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즉시 반송신고 수리

  * 유럽·중동 지역 수출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 후 신속통관 조치(증빙자료 미징구)

⑤ 중동 수출기업 수출신고 후 선적기한 연장

- (대 상)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는 화물
- (내 용) 기간內 적재 미이행에 따라 수출기업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적재기간 도래 건에 대해 기간연장 신청 등 사전안내**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277⑥)

** 유니패스에서 '수출 미선적'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하여 적재기한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 해소